

#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2년 7월 13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7월 14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및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
- 나. 운용규모 : 2,220,830백만원 (당초 계획 대비 1,709,289백만원 증가)

-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 수입계획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	변 경		증 감
		1차*	2차	
계	511,541	526,887	2,220,830	1,709,289
전 입 금	-	-	1,681,959	1,681,959
이자수입	16,039	24,872	36,856	20,817
예 치 금 수 회	495,502	502,015	502,015	6,513

< 지출계획 >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당 초	변 경		증 감	
		1차*	2차		
계	511,541	526,887	2,220,830	1,709,289	
재무활동	소 계	511,350	526,696	2,220,608	1,709,258 (증 334%)
	기타회계 전 출 금	150,000	150,000	150,000	-
	차 입 금 상 환	200,000	300,000	300,000	100,000
	차 입 금 이 자 상 환	23,955	36,433	36,433	12,478
	예 치 금	137,395	40,263	1,734,175	1,596,780
행정운영경비	소 계	191	191	222	31 (증 16%)
	기본경비	191	191	222	31

\* 재무활동 3.0% 변경(20% 미만)으로 소관 상임위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(제308회 정례회, '22. 6.)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위해 전입금 1,681,959백만원 증가
  - ▶ 전입금 : (당초) 0원 → (2차) 1,681,959백만원
  -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(5조 8,712억원) 중 법정 의무경비(2조 5,073억원)를 제외한 잔액(3조 3,639억원)의 50% 적립
- 순세계잉여금 적립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당초대비 20,817백만원 증가
  - ▶ 이자수입 : (당초) 16,039백만원 → (1차) 24,872백만원 → (2차) 36,856백만원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예치금이 당초대비 1,596,780백만원 증가
  - ▶ 예치금 : (당초) 137,395백만원 → (1차) 40,263백만원 → (2차) 1,734,175백만원
- 지방채 발행 수수료 지급 등 기본경비 31백만원 증가
  - ▶ 기본경비 : (당초) 191백만원 → (2차) 222백만원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〉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변경안의 개요

-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액 증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20%를 초과 변경하게 되어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## 나.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###### 1) 조성 현황

- 재정안정화계정(구 “감채기금”)은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2021년 설치되었으며, 2022년도말 조성액은 6,417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,581억 7백만원이 감액됨.

#### < 2022년도 재정안정화계정 조성 계획 >

(단위 : 백만원)

2021년도 말 조성액	2022년도 조성계획			2022년도 말 조성액
	수입	지출	증감	
999,902	16,039	374,146	△358,107	641,795

## 2) 수입·지출 계획 변경

- 2021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·지출 운용 규모는 당초 5,115억 4천 1백만원에서 1조 7,092억 8천 9백만원(334%) 증가하여 2조 2,208억 3천 만원으로 변경됨.

### <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>

#### 수입계획

####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					(단위:백만원)					
구 분	당 초	변 경		증 감	구 분	당 초	변 경		증 감	
		1차(5.16)	2차				1차(5.16)	2차		
계	511,541	526,887	2,220,830	1,709,289	계	511,541	526,887	2,220,830	1,709,289	
전 입 금	-	-	1,681,959	1,681,959	재무활동	소 계	511,350	526,696	2,220,608	1,709,258
이자수입	16,039	24,872	36,856	20,817		기타회계 전 출금	150,000	150,000	150,000	-
						차 입금 원금상환	200,000	300,000	300,000	100,000
						차 입금 이자상환	23,955	36,433	36,433	12,478
예 치 금 수	495,502	502,015	502,015	6,513		예 치 금	137,395	40,263	1,734,175	1,596,780
회 회					행정운영 경비	소 계	191	191	222	31
						기본경비	191	191	222	31

#### ① 수입계획의 변경

- 전입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(5조 8,712억원) 중 법정 의무경비 (2조 5,073억원)를 제외한 50%인 1조 6,819억 5천 9백만원이 순증됨.

-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적립 증가에 따라 당초대비 208억 1천 7백만원 증가한 368억 5천 6백만원으로 변경됨.
- 1차 변경(5.16)에서는 예치금회수 수입 증가와 정기예금 금리 인상<sup>1)</sup>에 따라 88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됨.
- 1차 변경에 반영된 예치금회수는 2021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65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됨(의회 보고).

## ② 지출계획의 변경

- 예치금은 순세계잉여금 적립이 증가하면서 당초 1,373억 9천 5백만원 대비 1조 5,967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1조 7,341억 7천 5백만원으로 변경됨.
- 1차 변경에서는 수입·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971억 3천 2백만원이 감액됨(의회 보고).
- 1차 변경에 반영된 차입금 원금상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규모 증가에 따라 모집공채 원금상환을 증액하면서 당초 2,000억원에서 1,000억이 증가함(의회 보고).

---

1) 제2금고(우리은행) 정기예금금리(6개월) 인상 : 22년 1월, 1.30% → 22년 4월, 2.12%

- 1차 변경에 반영된 차입금 이자상환은 차입금 원금상환 규모 증가와 국내 금리 인상<sup>2)</sup>을 반영하여 당초대비 124억 7천 8백만원 증가한 364억 3천 3백만원임(의회 보고).
- 기본경비는 지방채 발행 수수료 지급 등으로 당초 1억 9천 1백만원에서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2억 2천 2백만원임.

#### 다.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

- 「지방기금법」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액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.<sup>3)</sup>
-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방채상환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·운영되고 있음.
- 2022년에는 현재까지 모두 2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

2) 국내 기준금리 인상 : 21년 8월, 0.75% → 22년 1월, 1.25% → 22년 4월, 1.50%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수입·지출 운용 규모가 5,115억 4천 1백만원에서 2조 2,208억 3천만원으로 334%(1조 7,092억 8천 9백만원) 증가함.

- 제1차 기금운용변경안(5.16.)은 재무활동 증가액이 153억 4천 6백만원(3.0%)에 그쳐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함(제308회 정례회, 2022.6.14.).
- 2차 기금운용변경안(7.12.)은 2021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50%(1조 6,820억원)를 적립하면서 재무활동경비가 20%를 넘게 되어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받게 됨.
- 그동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나,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로 시금고 예치금이 과도하게 예치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요구됨.
- 서울시는 2022년 하반기 도시철도망 구축, 공공주택 확충, 코로나 19 피해 지원 등으로 총 26개 사업, 2조 7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.
-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.5%포인트 인상(7.13)에 이어 하반기 기준

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등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, 지방채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에 주력해야 함.

- 한편,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 중 수입·지출 계획 변경의 세부 설명은 제2차 변경 내용만을 담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된 모든 항목과 설명을 동의안에 포함해서 심의받아야 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노혜미	2133-8057